

학교폭력예방및사안처리절차

2026학년도 1학기 수지초 교직원 연수자료

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가.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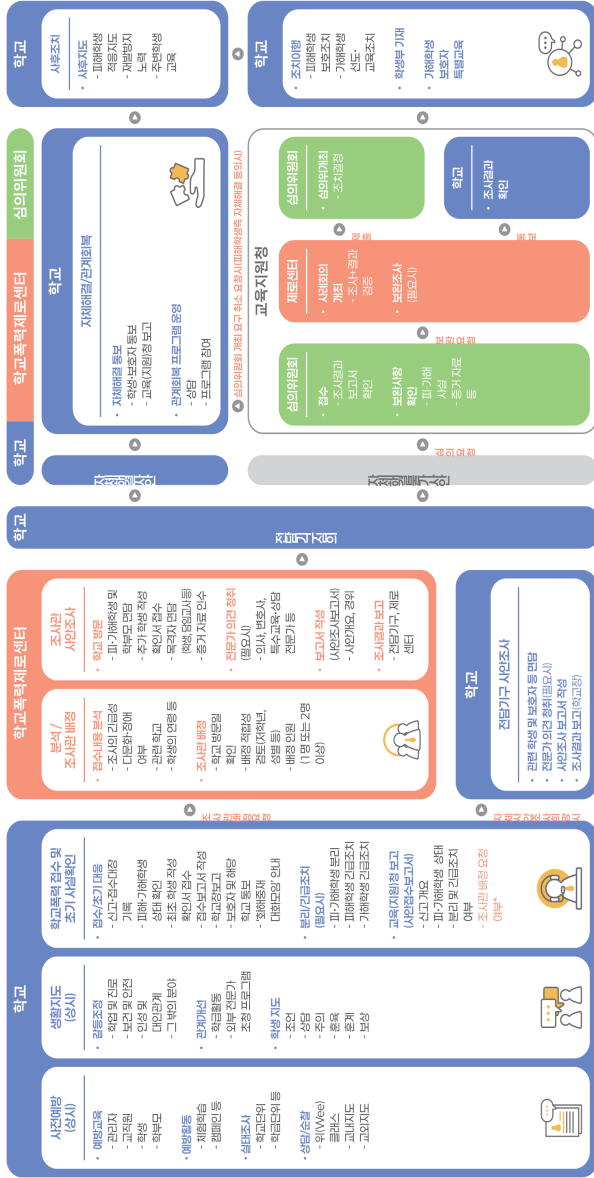
나.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의 사항

-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지도
-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경기형 사안처리 흐름도 (경미하지 않은 사안 시)



* 학교의 장(이)와 '학교폭력'이란 행위는 사안 접수 받고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나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단계	처리 내용	담당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누구나

신고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초기 사실 확인 실시-<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전담기구
-----------------	--	------

즉시 조치 (필요시)	· 관련학생 안전조치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전담기구
-------------	---	------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 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전담조사관 배정 또는 전담기구 책임교사 조사
------	--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제1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부동의하는	전담기구
-------------------	--	------

자체해결 사안	자체해결 불가 사안
---------	------------

학교 : 자체해결/관계회복	부동의	<제로센터>사례회의/보완조사/관계개선지원	
· 자체해결 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사례회의 개최 - 조사의 완결성·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 (필요시)	· 보완조사 - 조사관 추가 조사 - 전담경찰관 자문

동 의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함
-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23.4.12.)
- ※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및 SPO역할 강화 방안」 발표(23.12.7.)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10.24. 공포, 24.3.1.시행)

가. 전담조사관 :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나. 목적 :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경감 및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다.

라. 주요역할

- 1) 피·가해 사실 조사
- 2)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3)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조사 결과 보고
- 4) 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 5) 제로센터의 요청에 따른 보완조사 실시
- 6)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자문 요청
- 7)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심의위원회 참석

4. 사안 처리 시 유의 사항

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나.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중용 하지 않도록 한다.**

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바.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5. 담임교사 매뉴얼

가. 공동 생활지도

- 1) 교사 상호 간 협력적 생활지도, 일상적 학생 안전지도 강화, 담임교사와 전담 교사 간 인수인계 철저, 휴식 시간의 생활지도 강화
- 2)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1차 적인 교사 대응 : 학생 상태 파악 및 안정,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학생 하교 전 보호자에게 알리기

나. 사건 발생 직후

- 1) 담임 및 교과교사의 지도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
- 2)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신고**
- 3)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파악된 상황을 알리고 학생 상태 및 필요한 조치 확인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가. 학생 상담

- 1) 관련 학생에 대해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한다.
- 2) 집단폭행이나 목격 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 3)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4) 가해학생에게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피해 학생 상담	-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 피해 상황과 요구를 파악한다. -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지도·관리할 것을 인지시켜 준다. -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 진행 과정, 준비 사항,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준다.
가해 학생 상담	-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 학생을 낙인찍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결론이 나가거나 피해 및 가해학생이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가정적 요인 포함)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준다. - 추후에 가해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가해학생이 가해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를 희망하는 경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목격 학생 상담	-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서에 쓰도록 한다. -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 여부를 확인하여 위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나. 보호자 상담

- 1)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2)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린다.
- 3)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한다.
- 4)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5) 장애 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6) 다문화 학생(중도 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처
• 보호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 경찰신고(형사)와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피해 및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 조치하며 피해 학생이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 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다. 피해 학생 보호자 상담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 1)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 2)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 3)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 학생 처벌 등)
- 4)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5) 피해 측이 가해 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 입회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6)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 7)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 8)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외부기관의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라. 가해 학생 보호자 상담

가해 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 학생 보호자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한다.

- 1) 가해 학생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 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 2)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 3)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4)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 5) 가해 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 6) 가해 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7.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 제2호 : 일시보호
-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제4호 : 학급교체
- ◆ 제5호 : 기존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됨.
-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제4호 : 사회봉사
-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 제7호 : 학급교체
- ◆ 제8호 : 전학

8.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

-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 개인의 발달 특성 및 교우관계를 파악한다.**
- ✓ 학생들에게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은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경찰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 ✓ 학생들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킨다.
- ✓ 학생들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 ✓ 학생들이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였을 때는 **사유를 확인**하고 지도한다.
- ✓ 학생들과 면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수시 상담 및 조언**한다.
- ✓ 사회나 학교는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숙지하도록 지도한다.
- ✓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신고**하도록 지도한다.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통함을 인식시킨다.